

● ‘내부통제기준’의 ‘정보교류의 차단’ 관련 주요내용

6.1.7. 정보교류차단장치

- ① 회사는 내부 업무흐름 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접하게 되는 부서와 업무상 이러한 정보의 취득이 필요 없는 부서 사이에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같은 부서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다루는 임직원과 그러하지 않은 임직원 사이에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정보교류차단장치의 설치방법은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에의 접근차단, 보고라인의 분리, 문서의 분리보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등을 이용한다.

6.1.7.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조직

-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② 회사는 1항 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지정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을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한다. 단, 여기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은 컴플라이언스팀으로 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6.1.7.2 사내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

-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 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각 호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6.1.7.3 사외 정보교류 차단 방법 및 예외적 교류

- ①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사는 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본 항에 따라 교류하는 경우에도 6.1.7.2의 5항의 모든 요건(사내 정보교류차단의 예외적 교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4. 회사가 금융투자업 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1개월 (단,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5영업일 가능)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 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6. 투자일임재산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정보로서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에 대한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6.1.7.4 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 관리 및 감시

-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1.7.5 교육, 공개 및 기타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상기 정보차단장치, 정보교류통제 담당 부문의 설정, 정보교류통제 담당 부문별 책임자,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예외적 교류에 대한 기록방법, 점검주기,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종목의 지정 등의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하여 실무 지침인 "이해상충방지규정"에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6.1.8.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제공절차

임직원은 자신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외부의 자를 포함한다)에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 또는 공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제공은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제공자는 별지 10호 등을 이용하여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제공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승인을 얻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④ 이 기준에 의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알게 된 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업무상 부득이하게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비밀정보누설금지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기존의 관련 계약서에 비밀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해상충방지규정'의 '정보교류의 차단' 관련 주요내용

제3조(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기준)

-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6.1.7.1(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조직)의 제 1 항과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 ② 제 1 항제 2 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인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③ 제 1 항제 3 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인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④ 임직원은 업무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인 준법감시인의 판단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 ⑤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인 컴플라이언스팀에 통보하고, 컴플라이언스팀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책임자의 지정)

내부통제기준 6.1.7.1(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조직)의 제 3항 및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 ① 회사는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경영·부수 업무,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업무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부문으로 설정한다.
1. 고유재산운용
 2. 집합투자업·투자일임업
 3. 투자자문업(단,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이 없는 한 각 팀의 팀장을 책임자로 한다.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 3 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부문별 책임자는 제 1 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 대표이사
 2. 준법감시인
 3. 위험관리책임자
 4. 기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의 임원
- ② 제 1 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6.1.7.4(거래주의 · 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 관리 및 감시)의 제 5 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조건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2.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3.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4.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매매회전율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5.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 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 ③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85 조 및 제 98 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 176조 제 2항 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2.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 지시 ·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5.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④ 회사는 제 2 항 및 3 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1.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절차를 통해 상시 점검
 2. 사무공간 분리, 회의록 작성, 전산시스템 등 정보교류 차단 장치 설치 및 운영
 3.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간 정보교류에 대한 부문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
 4.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제7조(사내외 차단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 및 기록)

- ① 내부통제기준 6.1.7.2 (사내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 및 6.1.7.3 (사외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5년) 이상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 단, 내부통제기준 6.1.7.3의 제2항의 1호 및 2호와 관련하여 국내외 법령에 따르는 경우 또는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또는 Vendor Governance Committee의 승인 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해당 계약서 또는 회의록으로 예외적 교류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정보의 예외적 교류 승인 관련 정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제공자 또는 수령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예정일 또는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 방법 및 필요성 등 (내부통제기준 '별지 제 10호 서식' 또는 My-Sign 시스템의 취합자료관

리 '계열회사 정보제공로그'를 이용하여 승인 요청 및 기록을 할 수 있다)

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유지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제 1 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회사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정보 제공금지 및 예외)

-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판매회사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내부통제기준 6.1.7.3(사외 정보교류 차단 방법 및 예외적 교류)에서 정한 예외적 교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하는 정보 종류와 내용,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2. 제공정보의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② 제1항에 따라 판매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부서에서는 제공정보의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5년 동안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계열회사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정보 제공금지 및 예외)

-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정보를 계열회사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법 제 42 조 제 6 항 및 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에 따라 회사가 경영하는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또는 내부통제기준 6.1.7.3(사외 정보교류 차단 방법 및 예외적 교류)에서 정한 예외적 교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가능 정보는 위탁한 업무 또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정보로 한정할 것
 2.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3.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탁자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

제10조(계열회사 및 판매회사와의 임직원의 겸직)

- ① 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 3 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겸직, 파견 대상 회사 정보 (영위업무, 외국 당국의 등록 및 인허가 등)
 2. 겸직, 파견 임직원의 담당 업무 (직무, 직급 및 비상근 여부 등)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5 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 사유
 4. 겸직, 파견으로 인한 이해상충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11조(계열회사 및 판매회사와의 전산설비 공동이용 방법)

- ① 회사는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한 사무공간의 분리 및 출입문의 배치 등을 통하여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의 일상적 접근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전산설비는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하여 열람되어야 한다.
- ③ 2항의 전산설비는 정보 접근 및 이용을 제한, 통제하는 방식으로 ID가 관리되어야 한다.

제12조(계열회사 및 판매회사와의 회의, 통신)

- ①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의 임직원은 계열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회의, 통신을 한 경우 '별지 1. 회의, 통신 기록 양식'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회의, 통신 기록에 대하여 최소 분기별 1회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집합투자재산 정보의 고유재산운용 부서에의 제공 금지 및 예외)

- ①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운용업무 부서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집합투자재산 구성내역,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또는 내부통제기준 6.1.7.2(사내 정보교류 차단 방법 및 예외적 교류)에서 정한 예외적 교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3.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4.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 관리할 것
 5.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② 1 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2. 고유자산운용부서의 집합투자재산 정보 제공 요청 양식'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내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4 조(집합투자재산 운용 부서와 고유재산운용 부서간의 겸직 금지)

- ① 집합투자재산 운용 업무 부서와 고유재산 운용업무 부서 간에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고유재산 운용업무 부서와 집합투자재산 운용 업무 부서는 별도의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제 15 조(집합투자재산 부서와 고유재산 부서 간의 물적 설비 공동 이용)

- ① 집합투자재산 운용부서와 고유재산 운용부서 간에는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한 사무공간의 분리 및 출입문의 배치 등을 통하여 고유재산 운용부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부서에 대한 일상적 접근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전산설비는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고유재산 운용부서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하여 열람되어야 한다.
- ③ 2 항의 전산설비는 정보 접근 및 이용을 제한, 통제하는 방식으로 ID 가 관리되어야 한다.

제 16 조(집합투자재산 운용 부서와 고유재산 운용 부서간의 회의, 통신 기록 유지)

- ① 집합투자재산 운용부서의 임직원과 고유재산 운용부서의 임직원 간에 운용과 관련된 회의, 통신을 하는 경우 '별지 1. 회의, 통신 기록 양식' 또는 이에 준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 그 기록으로 별지 1의 양식을 갈음할 수 있다.